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보험 가입 및 대상 (안 제3조)
- 보험회사의 선정 (안 제4조)
-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 (안 제5조~제6조)

○ 보험금 청구 (안 제7조)

○ 보험금 지원 제외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이고 9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를 규정하고, 보험의 세부적인 내용인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원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보험증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험증권 및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20
번 호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발 의 자: 전승관、유승용、김지연

우경란 의원 (4인)

1. 제안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대상(안 제3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4조)

라. 보험료 납부(안 제5조)

마.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6조)

바. 보험금 청구(안 제7조)

사.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2.11.02. ~ 11.09.):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